

인천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732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7325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376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영

변론종결 2024. 5. 1.

판결선고 2024. 6. 12.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37622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사이에 2021. 12.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A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2. 1. 4. 접수 제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유성혜, 판사 서희경

별지